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

2006구단5635

재/판/요/지

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계속하여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.

주/문

1. 피고가 2006. 4.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/유

1. 처분의 경위

원고는 1984. 10. 1부터 ○○병원에서 구내식당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02. 10. 8 환자용 식기소독고에서 약 30kg의 식기가 담긴 바구니를 꺼내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(이하 '이 사건 재해'라 한다)를 입어 제4~5요추간 요추부신경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(이하 '이 사건 상병'이라 한다)의 진단을 받고, ○○병원 등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.

그 후 원고는 2006. 3.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, 피고는 2006. 4. 6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신경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서 원고의 통상 작업내용이나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

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1984. 10. 1부터 ○○병원에서 근무하였는데,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세탁실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. 원고는 평소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조리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으며,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.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했다고 할 것이고,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계속적 작업으로 인한 허리부위의 미세충격과 부담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유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

나. 인정사실

(1) 원고의 근무내역

- 원고는 1984. 10. 1 ○○병원에 입사하여 1992. 2. 1부터 1998. 11. 30까지 세탁실에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다.
- ○○병원의 구내식당 직원수는 14명이고, 조식에 9명, 중식에 9명, 석식에 8명이 각 조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, 통상 주간근무 시에는 07:00부터 19:30까지 근무를 하고, 야간근무 시에는 17:00부터 익일 09:00까지 근무하며, 2003. 7월경까지는 3일 근무한 후 1일 휴무형태로, 그 이후부터는 4일 근무한 후 1일 휴무형태로 각 근무하고 있다.
- 구내식당의 급식은 쌀, 반찬거리 등의 식재료 운반, 씻기 및 조리하기, 조리된 밥, 국, 반찬 등을 식판에 올려놓고, 그 식판을 이동장비에 끼워 넣기, 식기 등의 기본적인 설거지, 세척기에 의해 식기세척작업이 완료되면 그 식기를 바구니에 담고 소독기로 옮기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.
- 또한 원고를 포함한 구내식당 직원들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식재료를 썰고, 허리를 숙여가며 환자용 식판을 이동장비에 끼워 넣었으며, 각종 나물과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식재료를 직접 손으로 들고 이동한 후 솥에 넣는 일 등을 반복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평소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.

(2) 의학적 소견

- 척추전방전위증은 추체가 아래 추체에 대하여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를 말하는데, 그 발병원인에 따라 선천형, 협부형, 퇴행형, 외상형, 병적형, 수술후형 등으로 분류된다.
- 주치의 소견 : 2002. 10. 8 및 2006. 2. 3 내원시 원고의 상병상태는 모두 척추 요추부 제4~5번간 전방전위증이며, 이는 만성으로 추정된다. 요추부 제4~5번 척추전방전위증으로 2006. 3. 16 척추신경감압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, 단순사

진 및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만성적으로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며, 이는 22년 가까이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식당일로 인하여 누적된 만성적인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.

- 이 법원의 ○○대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: 원고의 상병명은 제4-5번 요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관 협착증으로 판단되고,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생각된다. 2002년 촬영한 필름과 비교하여 볼 때 2006년 필름에서 퇴행성 변화와 전위가 약간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나 큰 차이는 없고, 퇴행성 변화가 다소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4년간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. 원고의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이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, 질병의 악화에는 한 가지 요인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다. 판단

(1)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,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,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,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, 발병경위, 상병의 내용,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, 한편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.

(2) 원고는 1984. 10. 1 ○○병원에 입사한 이래 세탁 업무를 수행한 1992. 2월부터 1998. 11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식당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,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됨으로써 그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지는 점,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차례에 걸쳐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부터 계속하여 허리부위에 치료를 받은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 등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그 증상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퇴행성 질환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.

결/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